

附錄：環境關聯法律

1. 資源의節約과 再活用促進에 관한 法律
2. 廢棄物의 國家間移動 및 그 처리에 관한 法律
3. 廢棄物管理法
4. 油類污染損害賠償保障法
5. 環境影響評價法

資源의節約과 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

1992. 12. 8. 制定

法律 第4528號

第 1 章 總 則

第 1 條(目的) 이 法은 資源의 효율적인 이용과 廢棄物의 發生抑制, 資源의 節約 및 再活用促進을 통하여 環境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經濟發展과 國民福祉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再活用可能資源”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收去되거나 버려진 物品과 製品의 製造·加工·修理·販賣나 에너지供給 또는 土木·建築工事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物品(이하 “副産物”이라 한다)중 原材料로 이용할 수 있는 것(回收可能한 에너지 및 發熱을 포함하되, 放射性物質과 放射性物質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資源再活用業種”이라 함은 再活用可能資源을 이용하는 것이 技術的·經濟的으로 가능하고 그 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業種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을 말한다.
3. “第1種指定製品”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收去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再活用하는 것이 그 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고 再活用在 쉽도록 製品의 構造나 材質의 개선등이 필요한 製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品을 말한다.
4. “第2種指定製品”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收去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再活用하기 위하여 分離收去를 위한

표시를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製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品을 말한다.

5. “指定副産物”이라 함은 副産物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再活用하는 것이 그 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副産物을 말한다.
6. “再活用製品”이라 함은 再活用可能資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製品으로서 總理令이 정하는 製品을 말한다.
7. “再活用施設”이라 함은 再活用可能資源 또는 再活用製品을 製造·加工·組立·整備·收集·運搬·보관하는데 사용되는 裝置·裝備·設備등으로서 總理令이 정하는 裝置등을 말한다.
8. “再活用産業”이라 함은 再活用可能資源 또는 再活用製品을 製造·加工·組立·整備·收集·運搬·보관하거나 再活用技術등을 研究·開發하는 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을 말한다.
9. “廢棄物”이라 함은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을 말한다.

第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資源의 節約 및 再活用과 廢棄物의 發生抑制(이하 “資源再活用”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廢棄物管理法를 적용한다.

第4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 國家는 資源再活화를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는 管轄區域의 特性을 고려하여 國家의 施策에 따라 当地域안의 資源再活화를 촉진할 責務를 진다.

第5條(事業者의 責務) ① 事業者는 資源再活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措置에 協力하여야 한다.

第6條(國民의 責務) 國民은 再活用製品의 優先購買, 1回用品의 使用自制등으로 資源再活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事業者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措置에 協力하여야 한다.

第 7 條(資源再活用基本計劃의 수립) ① 環境處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후 資源再活用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年次別 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環境處長官에게 통보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③ 市長·郡守·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管轄區域의 特性을 고려한 地域안의 資源再活用計劃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施行計劃 및 資源再活用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2 章 資源再活用の 촉진을 위한 指導令

第 8 條(資源節約) ① 政府는 生産者 또는 消費者가 資源을 節約하도록 권고하거나 指導할 수 있다.

② 主務部長官은 물의 節約을 위한 裝置의 普及擴大를 위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第 9 條(再活用指定事業者의 준수사항) ① 資源再活用業種에 종사하는 事業者(이하 “再活用指定事業者”라 한다)는 環境處長官과 主務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本方針과 節次에 따라 統合하여 告示하는 指針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針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再活用製品의 종류별 再活用可能資源의 利用目標 및 再活用促進
2. 再活用指定事業者의 再活用可能資源의 利用計劃 및 再活用方案
3. 再活用可能資源의 이용에 관한 記錄·관리

4. 에너지回收 및 廢熱利用促進

第10條(第1種指定事業者의 준수사항) ① 第1種指定製品の 製造・輸入・加工・修理 또는 販賣를 業으로 하는 者(이하 “第1種指定事業者”라 한다)는 環境處長官과 主務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本方針과 節次에 따라 統合하여 告示하는 指針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針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製品の 再活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構造・材質等
2. 再活用促進에 관한 情報提供 및 技術向上
3. 製品設計시 分離收去 및 減量化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第11條(第2種指定事業者의 준수사항) ① 第2種指定製品の 製造・輸入・加工・修理 또는 販賣를 業으로 하는 者(이하 “第2種指定事業者”라 한다)는 環境處長官과 主務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本方針과 節次에 따라 統合하여 告示하는 指針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針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製品の 종류별 材質・成分 또는 分離收去到에 관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2. 第1號의 規定에 의한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第12條(指定副産物排出事業者의 준수사항) ① 指定副産物을 排出하는 事業者(이하 “指定副産物排出事業者”라 한다)는 環境處長官과 主務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本方針과 節次에 따라 統合하여 告示하는 指針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針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指定副産物의 用途別 規格에 따른 再活用方法
2. 指定副産物의 利用促進에 관한 計劃의 작성 및 실시
3. 指定副産物의 分離・破碎등에 관한 사항

第13條(資源再活用 권고 및 措置命令) ① 主務部長官은 第9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指定事業者, 第1種指定事業者, 第2種指定事業者 및

指定副產物排出事業者가 각 해당 指針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資源再活用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事業者에 대하여 指針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主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事業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名單과 指針違反內容을 公開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第14條(必要措置의 요청등) ① 環境處長官은 第9條 내지 第12條에서 規定한 指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主務部長官에게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動力資源部長官은 第9條第2項第4號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第15條(包裝廢棄物등의 發生抑制를 위한 권고 및 措置命令) ① 製品을 製造·輸入 또는 販賣하는 者(이하 “製造者등”이라 한다)는 包裝廢棄物의 發生抑制 및 再活用을 촉진하기 위하여 環境處長官이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 總理令으로 정하는 製品의 包裝方法 및 包裝材의 材質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主務部長官은 製造者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資源再活用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③ 環境處長官은 製造者등이 包裝廢棄物의 發生抑制 및 再活用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主務部長官에게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市長·郡守·區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飲食店·沐浴場·百貨店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을 경영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1回用品의 使用自制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의 실천을 권고할 수 있다.

⑤ 市長·郡守·區廳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事業者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地域의 資源再活用促進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⑥ 第2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의 내용·節次·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一般廢棄物排出者의 再活用의 이행등) ①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을 排出하는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이하 “一般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그 土地 또는 建物에서 排出되는 一般廢棄物중 再活用하거나 종류·性別로 分離保管하여 再活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一般廢棄物排出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資源再活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排出者에 대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第17條(再活用可能資源의 分離收去) ① 環境處長官은 再活用可能資源의 효율적인 活용을 위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全國의 分離收去體系를 구성할 수 있다.

② 市·道知事는 再活用可能資源의 효율적인 活용을 위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의 특성을 고려하여 地域別 分離收去體系를 구성할 수 있다.

③ 市·道知事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再活用可能資源의 保管施設 또는 容器를 設置할 수 있다.

第18條(廢棄物의 回收·處理費用의 預置) ① 環境處長官은 回收·再活용이 용이한 製品·容器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品·容器가 廢棄物이 되는 경우 그 回收·처리에 소요되는 費用을 당해 製品·容器的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로 하여금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管理基金에 매년 預置하게 할 수 있다. 다만, 事業者團體가 自體基金을 造成하여 廢棄物을 回收·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回收·처리의 범위안에서 그 費用의 預置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預置하여야 할 回收·처리에 소요되는 費用(이하 “預置金”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算出하되, 그 納付時期·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環境處長官은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總理令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製品·容器를 回收·처리한 경우에는 납부된 預置金중에서 그 回收·처리의 정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算出된 금액에 해당하는 預置金を 반환하되, 그 반환시기·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납부된 預置金額보다 많을 때에는 그 差額은 廢棄物管理基金의 부담으로 한다.

④ 環境處長官은 資源의 再活用促進을 위하여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 외의 者가 製品·容器를 回收·처리한 경우에는 第3項의 規定에 準하여 그 回收·처리에 소요된 費用을 반환되지 아니한 預置金중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環境處長官은 年度末에 預置金を 精算함에 있어서 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團體가 실제 回收·처리하지 아니한 廢棄物의 回收·처리에 소요되는 費用이 이미 납부한 預置金보다 많을 때에는 그 差額을 徵收하되, 그 納付時期·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 環境處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預置金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差額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内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 日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督促하여야 한다. 이 경우 滯納된 預置金 또는 差額에 대하여는 100分の 5에 상당하는 加算金を 賦課한다.

⑦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者가 그 기간내에 預置金·差額 또는 加算金を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19條(廢棄物의 發生抑制등을 위한 費用의 부담) ① 環境處長官은 廢棄物의 발생을 抑制하고 資源의 浪費를 방지하기 위하여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預置金賦課對象인 製品·容器외에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 및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特定大氣有害物質, 特定水質有害物質 또는 特定有毒物을 함유하고 있거나, 再活用이 어렵고

廢棄物管理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製品·材料·容器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品·材料·容器的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로 하여금 당해 廢棄物의 처리에 소요되는 費用을 매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부담하여야 할 費用(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의 算出基準·納付時期·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은 廢棄物管理基金에 이를 納入하여야 한다.

④ 環境處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を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日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督促하여야 한다. 이 경우 滯納된 負擔金에 대하여는 100分의 5에 상당하는 加算金を 賦課한다.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者가 그 기간내에 負擔金 또는 加算金を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 3 章 廢棄物管理基金

第20條(廢棄物管理基金) 廢棄物의 再活用 및 적정한 처리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廢棄物管理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21條(基金의 造成)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預置金 및 加算金
2.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 및 加算金
3.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4. 廢棄物의 國家間移動 및 그 처리에 관한 法律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
5.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의 出捐金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②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따로 計定을 設置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第22條(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이를 使用한다.

1. 再活用可能廢棄物의 購入 및 備蓄
2. 預置金의 還拂
3. 廢棄物의 再活用을 위한 사업 및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와 그에 대한 지원
4. 廢棄物의 효율적 再活用과 減量化를 위한 研究 및 技術開發
5.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廢棄物回收 및 再活用費用의 지원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第23條(基金의 관리·運用) ① 基金은 環境處長官이 관리·運用한다.

② 環境處長官은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事務를 合成樹脂廢棄物處理事業法에 의한 韓國資源再生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

第24條(基金의 借入) 環境處長官은 基金의 運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金融機關이나 다른 基金으로부터 長期借入 또는 一時借入을 할 수 있다.

第 4 章 再活用產業의 육성

第25條(對象事業)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再活用產業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하는 者(이하 “再活用事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施設의 設置事業
2. 第9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指定事業者, 第1種指定事業者, 第2種指定事業者, 指定副産物排出事業者의 資源再活用事業
3.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團地造成事業 또는 集荷·保管場所設置事業
4. 廢棄物管理法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申告者의 再活用事業

5. 資源再活用을 위한 研究 및 技術開發事業

6. 第1號 내지 第5號외에 再活用產業育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第26條(資金등의 지원)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再活用事業者에게 資源再活用に 필요한 資金을 補助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② 政府는 再活用事業者에게 필요한 設備資金, 研究·技術開發資金등을 다음 各號의 資金 또는 基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工業發展法에 의한 工業發展基金 또는 工業基盤技術開發事業資金
2. 中小企業의 經營安定 및 構造調整促進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한 中小企業構造調整基金
3. 에너지利用合理化法에 의한 에너지利用合理化基金

③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을 수립함에 있어 基金 또는 資金投資計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環境處長官은 第2項各號의 資金 또는 基金을 管掌하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再活用事業者의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第27條(借款 및 轉貸斡旋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資源再活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再活用事業者에게 借款 및 轉貸斡旋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第28條(國有財産등의 貸付) ① 政府는 再活用事業者에 대하여 國有財産중 雜種財産을 國有財産法의 規定에 따라 有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② 政府는 再活用事業者에 대하여 再活用製品의 生産·研究·試製生産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物品管理法의 規定에 따라 필요한 物品을 有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第29條(研究 및 技術開發事業의 실시) ① 政府는 資源再活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研究 및 技術開發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環境處長官은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 지정하는 國·公立 研究機關 및 大學등의 研究機關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研究 및 技術開發事業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環境處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研究機關에 대하여 資源再活用事業에 필요한 情報의 共同活用 및 技術情報의 제공을 권유할 수 있다.

第30條(再活用製品에 대한 購買促進등) ① 政府는 再活用製品의 購買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技術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環境處長官과 再活用製品을 管掌하는 主務部長官은 再活用製品의 購買促進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機關에 대하여 優先購買등의 필요한 措置를 요구할 수 있으며, 民間團體 또는 企業에 대하여 優先購買등을 권유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받은 公共機關은 優先購買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第31條(再活用製品의 規格·品質基準) 商工部長官은 環境處長官과 協議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再活用製品의 品目別 規格·品質基準을 정할 수 있다.

第32條(再活用團地의 造成등)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再活用事業者의 事業敷地 제공등을 위하여 再活用團地를 造成할 수 있다.

② 再活用團地의 造成·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再活用事業者에 대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供給하는 工場用地에 우선 入住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강구할 수 있다.

④ 市·道知事는 못쓰게 된 냉장고등 大型廢棄物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再活用可能資源을 集荷·보관할 수 있는 場所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 5 章 補 則

第33條(資源再活用協議會) ① 再活用製品의 生産者·使用者·再活用可能資源 收集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主務

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資源再活用促進을 위한 協議會(이하 “資源再活用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 主務部長官은 資源再活用協議會의 운영에 소요되는 費用을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第34條(보고 및 檢査 등) ① 環境處長官, 主務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各號에 해당하는 者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事業所 또는 事業場등에 출입하여 關係書類나 施設·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指定事業者
2.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第1種指定事業者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第2種指定事業者
4.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副產物排出事業者
5.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 등
6. 第1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
7.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排出者
8.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預置金賦課對象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
9.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賦課對象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출입·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第1號 내지 第4號·第8號 및 第9號에 해당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帳簿를 비치하고 記錄·보존하여야 한다.

第35條(關係機關의 협조) 環境處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資源再活用을 위한 政策樹立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
2.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第36條(聽聞) 主務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3條第2項, 第15條第2項 및 第5項 또는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命令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命令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7條(權限의 위임·委託) ① 이 법에 의한 環境處長官 또는 主務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地方 環境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環境處長官 또는 主務部長官은 이 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第 6 章 罰 則

第38條(罰則)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나 資料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資料를 제출한 者, 출입·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9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40條(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2.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3. 第1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第41條(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2. 第3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記錄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第42條(過怠料의 賦課·徵收) ① 第40條 또는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主務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主務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主務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② (중건의 廢棄物管理法에 의한 告示·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중건의 廢棄物管理法에 의하여 행한 告示·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③ (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중건의 廢棄物管理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管理基金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廢棄物管理基金으로 본다.

④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廢棄物管理法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같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廢棄物の國家間移動및그처리에관한法律

1992. 12. 8. 制定

法律 第4534號

第 1 章 總 則

第 1 條(目的) 이 法은 有害廢棄物의 國家間移動및그처리의 統制에 關한 바질 協約(이하 “協約”이라 한다)의 施行을 爲하여 廢棄物의 輸出·輸入 및 國內經由(이하 “輸出入등”이라 한다)를 規制함으로써 廢棄物의 國家間移動으로 인한 環境汚染을 防止하고 國際協力を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廢棄物”이라 함은 協約附屬書에 規定된 有害廢棄物 및 기타의 廢棄物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을 말한다.
2. “協約當事國”이라 함은 協約에 加入한 國家 또는 國際機構를 말한다.
3. “移動書類”라 함은 協約附屬書에 規定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情報을 기재한 書類를 말한다.

第 3 條(適用範圍) ② 이 法은 原子力法에 의한 放射性物質 및 이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法은 海洋汚染防止法에 의한 海域排出廢棄物과 船舶의 航行에 따라 排出되는 廢棄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 4 條(國家의 責任) ① 國家는 廢棄物이 國家間에 移動됨으로써 발생되는 사람의 건강 및 環境에 대한 被害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國民의 건강과 環境汚染豫防을 爲하여 廢棄物의 輸出入등을 統制·管理하기 위한 적절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國家는 廢棄物의 積攢관리를 위한 技術의 開發, 情報의 收集·이용 및 傳播, 管理體系의 구축등을 위하여 協約當事國등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國家는 廢棄物과 관련된 技術의 開發 및 移轉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第 5 條(廢棄物 輸出入者등의 責務) ① 廢棄物을 輸出·輸入·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廢棄物의 輸出入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環境에 危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技術의 開發 및 情報의 교환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廢棄物을 輸出·輸入·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廢棄物의 輸出入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環境에 危害가 발생한 때에는 이의 제거에 필요한 모든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 2 章 廢棄物의 輸出入등의 統制 및 관리

第 6 條(廢棄物의 輸出許可) ① 廢棄物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許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環境處長官과 協議하여야 하며, 輸出하고자 하는 廢棄物의 輸入國 및 經由國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經由國의 同意를 얻어야 하는 경우 同意要請을 한 날부터 90日이내에 回信이 없는 때에는 同意없이 許可할 수 있다.

③ 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商工部長官은 物理的·化學的 特性이 동일한 廢棄物을 國內의 동일한 稅關 및 輸入國의 동일한 稅關을 통하여 동일인에게 輸出하는 경우에는 12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許可할 수 있다.

第7條(輸出移動書類의 교부등) ① 商工部長官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輸出廢棄物에 관한 移動書類(이하 “輸出移動書類”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商工部長官은 輸出移動書類를 교부한 때에는 그 寫本을 環境處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第8條(輸出廢棄物의 運搬) ① 輸出廢棄物을 運搬하는 者는 당해 輸出廢棄物에 관한 輸出移動書類를 지나야 하며, 輸出廢棄物을 引渡하는 경우에는 輸出移動書類에 引渡日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署名하여야 한다.

② 輸出廢棄物을 運搬하는 者는 輸出移動書類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搬入命令에 의하여 搬入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條(輸出移動書類에 관한 申告) ① 輸出移動書類를 교부받은 者는 다음 各號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輸出移動書類를 첨부하여 商工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당해 廢棄物을 輸出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輸出移動書類의 내용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게 된 때

② 商工部長官은 第1項第2號의 사유로 申告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이 기재된 輸出移動書類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③ 商工部長官은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移動書類를 다시 교부한 때에는 環境處長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그 寫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第10條(廢棄物의 輸入許可) ① 廢棄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許可를 함에 있어 輸出國의 主務官廳으로부터 당해 廢棄物의 輸入同意要請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許可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商工部長官은 輸出國의 主務官廳이 廢棄物의 輸入同意要請을 한 때에는 당해 廢棄物의 輸入에 관한 同意여부를 결정하여 輸出國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商工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同意여부를 決定하는 경우에는 미리 環境處長官과 協議하여야 하며, 協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⑥ 商工部長官은 物理的·化學的 特性이 동일한 廢棄物을 輸出國의 동일한 稅關 및 國內의 동일한 稅關를 통하여 동일인이 輸入하는 경우에는 12月の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許可할 수 있다.

第11條(輸入移動書類의 교부등) ①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의

輸入許可를 받은 者는 당해 輸入廢棄物이 國內에 輸入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輸入廢棄物에 대하여 輸出國의 主務官廳이 발행한 移動書類를 商工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國의 移動書類를 제출받은 경우 그 移動書類에 기재된 내용이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國의 輸入同意要請의 내용과 一致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一致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輸入廢棄物에 관한 移動書類(이하 “輸入移動書類”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商工部長官은 輸入移動書類를 교부한 때에는 그 寫本을 環境處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第12條(輸入廢棄物의 運搬 또는 처리) ① 輸入廢棄物을 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당해 輸入廢棄物에 관한 輸入移動書類를 지녀야 하며, 輸入廢棄物을 引渡하는 경우에는 輸入移動書類에 引渡日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署名하여야 한다.

② 輸入廢棄物을 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輸入移動書類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搬出命令에 의하여

搬出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3條(輸入廢棄物の讓渡・讓受等) ① 輸入廢棄物을 讓渡・讓受하는 때에는 당해 輸入廢棄物에 관한 輸入移動書類를 함께 引渡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廢棄物을 讓受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商工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商工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環境處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第14條(輸入移動書類에 관한 申告) ① 輸入移動書類를 교부받거나 引受한 者는 다음 各號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輸入移動書類를 첨부하여 商工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당해 輸入廢棄物의 처리를 완료한 때

2. 輸入移動書類의 내용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게 된 때

② 商工部長官은 第1項第2號의 사유로 申告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이 기재된 輸入移動書類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③ 商工部長官은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移動書類를 다시 교부한 때에는 環境處長官에게 그 내용을 通報하거나 그 寫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第15條(廢棄物の 輸出許可取消) ① 商工部長官은 廢棄物의 輸出 또는 輸入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2. 第6條第3項 또는 第1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輸出 또는 輸入許可를 받은 廢棄物이 許可당시 예상하지 못한 環境汚染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情報가 발견된 때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때

② 環境處長官은 廢棄物의 輸出 또는 輸入許可를 받은 者가 第1項各號의 1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商工部長官에게 輸出 또는 輸入許可의

取消을 요청할 수 있다.

第16條(廢棄物의 經由同意등) ① 環境處長官은 輸出國의 主務官廳이 輸出廢棄物의 國內經由의 同意要請을 한 때에는 그 境遇에 관한 同意여부를 결정하여 輸出國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國內를 境遇하여 廢棄物을 다른 國家로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는 國內를 境遇할 수 없다.

第17條(輸出入되는 廢棄物의 관리) ① 廢棄物을 輸出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包裝·標識附着등을 하여야 한다.

② 輸出 또는 輸入되는 廢棄物의 運搬·보관·처리·再活用등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廢棄物管理法 또는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을 적용한다.

第18條(輸出入등 港口의 지정) ① 商工部長官은 廢棄物의 輸出 또는 輸入許可를 할 때에는 環境處長官과 協議하여 船積 또는 荷役港口를 지정하거나 船積 또는 荷役區域을 제한할 수 있다.

② 環境處長官은 廢棄物의 國內經由를 同意할 때에는 經由港口 또는 經由地域을 제한할 수 있다.

第19條(輸出入금지요청) 環境處長官은 사람의 건강과 環境保全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廢棄物의 輸出 또는 輸入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 줄 것을 商工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商工部長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20條(搬入命令등) ① 商工部長官은 廢棄物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廢棄物의 搬入 또는 搬出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第6條第1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輸出 또는 輸入한 때
2. 第6條第3項 또는 第1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輸出 또는 輸入한 때

3.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國의 輸入同意要請의 내용과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移動書類의 내용이 一致하지 아니한 때
4. 輸出 또는 輸入된 廢棄物이 許可당시 예상하지 못한 環境汚染을 유발할 수 있는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 ② 環境處長官은 廢棄物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가 第1項各號의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商工部長官에게 廢棄物의 搬出 또는 搬入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環境處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第21條(代執行) ① 商工部長官은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가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당해 廢棄物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② 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執行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環境處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第22條(보고·檢査등) ① 商工部長官 또는 環境處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所·事業場·廢棄物保管場所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施設·裝備·보관상태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許可를 받은 者
 2.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廢棄物을 運搬하는 者
 3.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許可를 받은 者
 4.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廢棄物을 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
 5.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廢棄物을 讓受한 者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출입·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 3 章 補 則

第23條(手數料) ①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許可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算出方法, 납부방법 및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徵收하는 手數料는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促進에 관한 法律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管理基金에 이를 納入하여야 한다.

第24條(관계기관의 협조) 商工部長官 또는 環境處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25條(主務官廳등의 지정) 政府는 協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主務官廳과 連絡官을 지정하고 이를 協約事務局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26條(聽聞) 商工部長官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나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處分의 상대방 또는 그 代理人에게 意見陳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處分의 상대방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所在不明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環境保全에 큰 危害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7條(權限의 위임·委託) ① 이 法에 商工部長官 또는 環境處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機關의 長 및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② 商工部長官 또는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 또는 委託한 事務에 관하여는 그 위임 또는 委託을 받은 者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第 4 章 罰 則

第28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第1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廢棄物을 輸出하거나 輸入한 者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命을 위반한 者

第2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8條第2項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出移動書類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
2. 第12條第2項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入移動書類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

第3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者
2.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출입·檢査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者

第31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8條 내지 第3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2條(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出移動書類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同書類에 해당사항을 기재 또는 署名하지 아니한 者
2. 第9條第1項·第13條第2項 또는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入移動書類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同書類에 해당사항을 기재 또는 署名하지 아니한 者
 4. 第17條第1項에 위반하여 包裝·標識附着등을 하지 아니한 者
 5.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나 資料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資料를 제출한 者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商工部長官 또는 環境處長官이 賦課·徵收한다.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の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商工部長官 또는 環境處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商工部長官 또는 環境處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 ① (施行日) 이 법은 協約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 ② (經過措置) 이 법은 施行당시 對外貿易法의 規定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으로부터 廢棄物의 輸入承認을 얻은 者는 그 輸入承認의 有效期間동안 이 법에 의하여 輸入許可를 받은 者로 본다.

廢棄物管理法

全文改正 1991. 3. 8. 法律 第4363號

改正 1992. 12. 8 法律 第4539號

1993. 3. 6 法律 第4541號(政府組織法)

第 1 章 總 則

第 1 條(目的) 이 법은 廢棄物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청결히 함으로써 環境保全과 國民生活의 質的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92.12.8>

第 2 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廢棄物”이라 함은 쓰레기·燃燒滓·汚泥·廢油·廢酸·廢알카리·動物의 死體등으로서 사람의 生活이나 事業活動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物質을 말한다.
2. “一般廢棄物”이라 함은 特定廢棄物의의 廢棄物을 말한다.
3. “特定廢棄物”이라 함은 事業活動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汚泥·廢油·廢酸·廢알카리·廢고무·廢合成樹脂등 環境 및 國民保健에 有害한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質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廢棄物의 燒却·中和·破碎·固形化등에 의한 中間處理와 埋立·海域排出등에 의한 最終處理를 말한다.
5. “廢棄物處理施設”이라 함은 一般廢棄物處理施設과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을 말한다.
6.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이라 함은 燒却·破碎·埋立등의 방법에 의하여 一般廢棄物을 安全하게 처리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7.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이라 함은 燒却·破碎·中和·固形化·埋立 등의 방법에 의하여 特定廢棄物을 安全하게 처리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8. “再活用”이라 함은 廢棄物을 再生하거나 再利用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適用範圍) ① 이 법은 原子力法에 의한 放射性物質 및 이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과 醫療法에 의한 摘出物등과 汚水·糞尿 및 畜產廢水의 처리에 관한 法律에 의한 汚水·糞尿 및 畜產廢水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의한 廢棄物의 처리에 있어서 海域排出에 관하여는 海洋汚染防止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4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 市長·郡守·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여 이를 유지·管理하여야 하며, 一般廢棄物의 收集·運搬·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資質向上으로 一般廢棄物處理事業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住民의 清掃意識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하고, 그 管轄區域안의 一般廢棄物處理事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 한다.

③ 國家는 特定廢棄物의 排出 및 處理狀況을 파악하고, 特定廢棄物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國家는 廢棄物處理에 관한 技術을 研究·開發·지원하고,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하며, 서울特別市·直轄市·道(이하 “市·道”라 한다)간의 一般廢棄物處理事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 한다.

第5條(一般廢棄物의 廣域管理)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2이상의 市·郡·區

에서 발생하는 一般廢棄物을 廣域의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廣域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공동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域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또는 운영을 總理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 6 條(國民의 責務) ① 모든 國民은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청결히 유지하고, 廢棄物의 減量化 및 資源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가 所有·占有 또는 管理하고 있는 土地·建物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市長·郡守·區廳長이 정하는 計劃에 따라 大清掃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第7條에 規定된 地域 또는 施設을 管理하고 있는 者는 당해 地域 또는 施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 7 條(廢棄物의 投棄禁止) 누구든지 正當한 사유없이 文化遺跡地·公園·廣場·野營場·海水浴場·道路·港灣·漁港·下水道·河川·湖沼·山林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또는 施設에 廢棄物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第 8 條(廢棄物處理基本計劃) ① 市·道知事は 環境處長官이 정하는 指針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一般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環境處長官은 基本計劃을 승인 또는 變更承認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의 一般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의 一般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과 特定廢棄物의 發生量·發生地域 및 處理施設 設置의 妥當性 檢討資料등을 基礎로 하여 國家의 廢棄物處理에 관한 綜合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 9 條(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決定·告示)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8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에 관한 綜合計劃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位置·規模·面積·設置時期·事業施行者등을 명시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을 決定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官報 또는 市·道公報에 告示하고, 그 圖面을 누구든지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第10條(土地등의 收用·사용) ①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에 따라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土地·建物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물건이나 土地·建物 또는 물건에 관한 所有權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適用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收用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決定 또는 變更은 同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으로 보며, 裁決申請은 同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決定 또는 變更을 한 날부터 2年 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11條(廢棄物公定試驗方法) 環境處長官은 廢棄物로 인한 危害性의 判斷 및 廢棄物의 처리방법의 決定에 필요한 基礎資料가 되는 廢棄物의 性狀 및 汚染物質의 溶出등을 分析함에 있어서 그 分析의 정확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廢棄物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 2 章 廢棄物의 收集·運搬·처리

第 1 節 一般廢棄物

第12條(一般廢棄物管理區域) 全國을 一般廢棄物管理區域으로 한다. 다만,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이 지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

第13條(一般廢棄物의 처리등)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一般廢棄物管理區域 안에서 排出되는 一般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하여야 한다.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業者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 및 방법에 따라 一般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하여야 한다.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處理業者가 그 業務를 代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市長·郡守·區廳長은 一般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14條(多量排出一般廢棄物의 처리등) ① 事業活動에 수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量이상의 一般廢棄物을 排出하는 事業者(이하 “多量排出者”라 한다)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당해 廢棄物의 종류·發生量등을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申告하여야 한다.

② 多量排出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및 方法에 따라 一般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하거나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業者에게 委託하여 一般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總理令이 정하는 多量排出者는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 및 方法에 따라 一般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할 수 있다.<改正 92.12.8>

第15條(一般廢棄物排出者의 處理協助등) ① 一般廢棄物管理區域안에 있는 一般廢棄物이 排出되는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이하 “一般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그 土地 또는 建物에서 排出되는 一般廢棄物중 燒却·埋立등 生活環境保全상 지장이 없는 方法으로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一般廢棄物은 이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一般廢棄物排出者는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一般廢棄物을 종류·性狀別로 分離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第16條(一般廢棄物保管施設등의 設置)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

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一般廢棄物排出者로 하여금 總理승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一般廢棄物保管施設 또는 容器를 設置하게 할 수 있다.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一般廢棄物排出者가 設置하는 保管施設 또는 容器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總理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정하여 一般廢棄物排出者에게 그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17條(一般廢棄物處理業) ① 一般廢棄物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業(이하 “一般廢棄物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승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施設·裝備·技術能力등 요건을 갖추어 業種別로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總理승이 정하는 重要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一般廢棄物處理業의 業種區分과 營業內容은 다음과 같다.

1. 一般廢棄物收集·運搬業

一般廢棄物을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營業

2. 一般廢棄物中間處理業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갖추고 一般廢棄物을 燒却·破碎등의 方法에 의하여 中間處理하는 營業

3. 一般廢棄物最終處理業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갖추고 一般廢棄物을 埋·海域排出등의 方法에 의하여 最終處理하는 營業

③ 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그 營業區域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이하 “一般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는 당해 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基準을 초과하여 料金を 받아서는 아니된다.

第18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一般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一般廢棄物處理業의 許可가 取消된 者로서 그 許可가 取消된 날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19條(許可의 取消등) ① 市·道知事는 一般廢棄物處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할 때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第18條 第1號 내지 第3號 또는 第5號에 해당된 때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3. 許可를 받은 후 1年이내에 營業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年이상 休業한 때
4.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 市·道知事는 一般廢棄物處理業者가 第18條 第5號에 해당하는 사유로 許可를 取消하고자 할 때에는 任員改任에 필요한 期間을 6月이상 주어야 한다.

第20條(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및 管理) ①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은 總理 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②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第17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및 許可를 받은 者가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미만의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승인 또는 신고사항중 總理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2.12.8>

③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者는 그 設置工事を 완료한 후 당해
施設의 使用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
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또는 그 管理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管理基準에 따라 그 施設을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⑤ 環境處長官은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또는 유지·管理가 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 또는 管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設置한 者 또는 그 管理者에게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의 改善을 命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당해
施設의 使用정지를 命할 수 있다.

⑥ 環境處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과 使用停止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당해 施設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第21條(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計·施工業) ①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計·
施工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設
計·施工業者”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設計·施工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 設計·施工을 할 경우와 第20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設置申告對象인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設計·施工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改正 92.12.8>

1. 事業場을 경영하는 者가 자기의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一般廢棄物을
처리하기 위하여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2. 廢棄物處理에 관한 研究를 目的으로 하는 경우
 3. 기타 總理令이 정하는 경우
- ② 第1項 但書의 경우 環境處長官은 總理令이 정하는 資格이 있는 者를
施工監理者로 지정할 수 있다.

③ 一般廢棄物處理施設の設計・施工業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施設・裝備・技術能力등 요건을 갖추어 環境處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總理令이 정하는 重要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第18條의 規定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施工業의 登錄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2條(登錄의 取消등) ① 環境處長官은 一般廢棄物處理施設の 設計・施工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할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21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8條 第1號 내지 第3號 또는 第5號에 해당된 때

2. 詐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것이 判明된 때

3. 登錄을 한 후 1年이내에 營業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正當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年이상 休業한 때

4. 第21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5.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때

6. 設計・施工業者가 그 設計・施工을 不實하게 하거나 都給받은 工事を 一括하여 下都給한 때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 第19條 第2項의 規定은 第1項 第1號에 의한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의 正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3條(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된 設計・施工業者의 繼續工事) ①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의 處分을 받은 者는 그 處分전에 체결한 契約分에 한하여 당해 工事の 設計・施工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處長官은 總理令이 정하는 資格이 있는 者를 施工監理者로 지정하여 工事を 監理・監督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施工을 하는 者는 당해 施設의 設計・

施工을 완료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設計·施工業者로 본다.

第 2 節 特定廢棄物

第24條(特定廢棄物排出者의 義務等) ① 特定廢棄物을 排出하는 事業者(이하 “特定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事業活動에 따라 발생하는 特定廢棄物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生産工程에 있어서는 技術開發 및 再活用등의 방법으로 特定廢棄物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抑制하여야 한다.

② 特定廢棄物排出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特定廢棄物排出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帳簿를 비치하고 特定廢棄物의 發生量·再活用狀況·處理實績등을 記錄하되, 그 保存期間은 最終記載를 한 날부터 5年으로 한다.

第25條(特定廢棄物의 처리) ① 特定廢棄物排出者는 그의 事業場에서 발생하는 特定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이하 “特定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再活用目的으로 다른 사람의 特定廢棄物을 처리하는 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 委託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② 國家 또는 總理令이 정하는 者는 特定廢棄物의 廣域處理를 위한 施設(이하 “公共處理施設”이라 한다)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共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處理施設에의 委託處理에 관한 手數料 기타 委託處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④ 特定廢棄物排出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特定廢棄物을 收集·보관·運搬·처리하여야 한다.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廢棄物處理者등이 그 業務를 委託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2.12.8>

⑤ 環境處長官은 特定廢棄物을 처리하는 者가 特定廢棄物을 처리함에 있어 第4項의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收集·보관·運搬 또는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정하여 당해 特定廢棄物을 처리하는 者에게 收集·보관·運搬 또는 처리방법의 變更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2.12.8>

第26條(特定廢棄物處理業) ① 特定廢棄物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業(이하 “特定廢棄物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施設·裝備·技術能力등 요건을 갖추어 業種別로 環境處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總理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特定廢棄物處理業의 業種區分과 營業內容은 다음과 같다.

1. 特定廢棄物收集·運搬業

特定廢棄物을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營業

2. 特定廢棄物中間處理業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을 갖추고 特定廢棄物을 燒却·中和·破碎·固形化등의 방법에 의하여 中間處理하는 營業

3. 特定廢棄物最終處理業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을 갖추고 特定廢棄物을 埋立·海域排出등의 방법에 의하여 最終處理하는 營業

③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그 營業區域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環境處長官은 特定廢棄物의 發生量과 特定廢棄物處理業者의 地域의 分布등을 고려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제한할 수 있다.

⑤ 第18條 및 第19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와 許可의 取消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7條(特定廢棄物의 運搬·處理申告) 特定廢棄物을 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에게 그 運搬 또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申告하여야 한다.

第28條(特定廢棄物處理施設の 設置 및 管理) ①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은 總理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②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및 許可를 받은 者가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중 總理令이 정하는 重要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特定廢棄物處理施設の 設置者는 그 設置工事を 완료한 후 당해 施設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또는 그 管理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管理基準에 따라 그 施設을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⑤ 環境處長官은 特定廢棄物處理施設の 設置 또는 유지·管理가 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 또는 管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設置한 者 또는 그 管理者에게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의 개선을 命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당해 施設의 사용정지를 命할 수 있다.

⑥ 環境處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과 使用停止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第 3 章 廢棄物處理施設周邊影響地域의 지원등

第29條(廢棄物處理施設周邊影響地域에 대한 지원)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 그 施設의

원활한 設置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周邊地域(이하 “周邊影響地域”이라 한다)의 住民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增大, 福利增進, 生活의 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周邊影響地域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2.12.8>

第30條(周邊影響地域의 지원을 위한 財源의 확보)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周邊影響地域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데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에 필요한 財源은 廢棄物處理施設設置者의 出捐金과 第13條第4項 및 第25條第3項에 의한 手數料등으로 하며, 기타 財源의 확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2.12.8>

第31條(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등에 대한 住民意見聽取)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를 決定하고자 하는 경우 및 周邊影響地域의 住民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住民의 의견을 收斂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2.12.8>

第32條(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에 따른 環境影響調査)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으로 인하여 周邊影響地域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調査하여 이를 住民에게 公開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2.12.8>

第33條 내지 **第38條** 削除 <92.12.8>

第 4 章 廢棄物處理業者등에 대한 指導·監督등

第39條(技術管理人)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당해 施設의 유지·管理에 관한 技術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技術管理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스스로 技術管理를 하는 경우와 技術管理能力이 있다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와 技術管理代行契約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인의 資格·준수사항 및 技術管理代行契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40條(廢棄物處理擔當者등에 대한 教育) ① 環境處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擔當者등에 대하여 그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教育을 실시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41條(帳簿의 記錄·보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帳簿를 비치하고, 廢棄物의 收集·運搬·處理狀況등(第7號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製品·容器등의 生産·輸入 및 販賣量과 回收 및 處理量등)을 記錄하되, 그 保存期間은 最終記載를 한 날부터 5年으로 한다. <改正 92.12.8>

1.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業者
2. 第2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管理하는 者
3. 第2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
4.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廢棄物處理業者
5. 第2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管理하는 者
6. 第4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
7. 第44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

第42條(休業·廢業등의 申告)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業者, 第21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計·施工業者 또는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廢棄物處理業者는 그 營業을 休業·廢業 또는 再開業한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許可 또는

登錄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43條(보고·檢査등) ①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總理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所 또는 事業場등에 出入하여 關係書類나 施設·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5章 補 則

第44條(廢棄物의 輸入制限) 環境處長官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廢棄物의 輸入을 제한하여 줄 것을 商工資源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3.3.6>

第44條의2 (廢棄物再活用申告등) ① 總理令이 定하는 廢棄物을 原料·材料·燃料등으로 再活用(再活用을 目的으로 하는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者중 一般廢棄物을 再活用하고자 하는 者는 市·道知事에게, 特定廢棄物을 再活用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處長官에게 總理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再活用對象品目 및 방법등을 각각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중 總理令이 定하는 廢棄物을 再活用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定하는 施設·裝備·技術能力등을 갖추어야 한다. <本條新設 92.12.8>

第44條의3 (廢棄物의 回收措置) ① 事業者는 製品의 製造·加工·輸入·販賣등을 함에 있어서 그 製造·加工·輸入·販賣등에 사용되는 材料·容器나 製品등이 廢棄物로 되는 경우 그 回收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材料·容器·製品등이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 및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大氣汚染物質, 水質汚染物質, 有毒物중 總理令이 정하는 物質을 함유하고 있거나 多量으로 製造·加工·輸入·販賣되어 廢棄物이 되는 경우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告示하는 廢棄物의 回收 및 처리 방법에 따라 回收·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道知事가 告示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事業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回收 및 처리방법에 따라 回收·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回收 및 처리에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者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廢棄物의 回收 및 적정한 처리등에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道知事가 措置命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本條新設 92.12.8>

第44條의4 (新規工團造成등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量이상의 廢棄物을 排出하는 工業團地 또는 工場이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工業團地 또는 工場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立地및開發에 관한 法律과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 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工業團地 또는 工場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主務部長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本條新設 92.12.8>

第45條(廢棄物處理에 대한 措置命令) ①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生活環境保全상 중대한 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당해 廢棄物의 처리를 한 者 또는 당해 廢棄物의 처리를 委託한 者에 대하여 그 危害의

제거 또는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1. 一般廢棄物處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一般廢棄物을 처리한 경우

2. 特定廢棄物處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特定廢棄物을 처리한 경우

②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命을 받을 者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辯明 및 有利한 證據를 제출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生活環境保全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6條(代執行)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廢棄物의 처리를 한 者 또는 그 처리를 委託한 者가 第4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廢棄物의 처리를 한 者 또는 그 처리를 委託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第47條(廢棄物處理施設의 事後管理등) ① 第20條 第2項 및 第2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承認을 얻은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第17條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處理業 및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포함한다)는 그가 設置한 廢棄物處理施設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閉鎖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사용종료 또는 閉鎖한 者에 대하여 당해 施設의 사용종료 또는 閉鎖後 住民의 건강 또는 財産이나 周邊環境의 被害防止를 위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浸出水處理施設의 稼働等 事後管理에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③ 環境處長官은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履行保證金を 납부한 者, 事後管理의 이행을 保證하는 保險에 加入한 者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後管理履行保證金を 事前積立한 者가 事後管理業務를 적합하지 아니하게 행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이의 是正을 命할 수 있으며,

그 期間내에 이를 是正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하여금 그 義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은 납부된 事後管理履行保證金·履行保證保險金 또는 事後管理履行保證金の 事前積立金으로 充당한다. <改正 92.12.8>

第 48 條(廢棄物處理施設の 事後管理履行保證金) ① 環境處長官은 第47條第2

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對象인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이 그 사용종료 또는 閉鎖후 浸出水의 漏出등으로 인하여 住民의 健康 또는 財産이나 周邊環境에 中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을 設置한 者로 하여금 그 事後管理의 이행을 保證하게 하기 위하여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環境管理公團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汚染防止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에 預置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의 預置를 免제하거나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의 預置에 같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2.12.8>

1. 事後管理의 이행을 保證하는 保險에 加入한 경우
2.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을 事前積立한 경우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設置한 者가 預置하여야 할 費用(이하 “事後管理履行保證金”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算出하되, 그 納付時期·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2.12.8>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履行保證金を 納付期限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2.12.8>

④ 環境處長官은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設置한 者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事後管理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납부된

事後管理履行保證金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算出된 금액에 해당하는 事後管理履行保證金を 반환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 第 49 條(事後管理履行保證金の 事前積立) ① 環境處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設置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의 사용종료 또는 閉鎖후의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의 일부를 基金에 事前積立하게 할 수 있다.
-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設置한 者가 事前積立한 금액이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履行保證金보다 많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差額을 반환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第 49 條의2 (事後管理履行保證金の 用途등) 第48條 및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履行保證金 및 事前積立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이를 사용한다.

1. 事後管理履行保證金 및 埋立施設의 事後管理를 위한 事前積立金の 還拂
2. 埋立施設의 事後管理의 代行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本條新設 92.12.8>

- 第 50 條(사용종료 또는 閉鎖후의 土地利用制限등) ① 環境處長官은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對象인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이 사용종료되거나 閉鎖된 후 浸出水의 漏出, 堤防의 遺失등으로 인하여 住民의 건강 또는 財産이나 周邊環境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이 所在한 土地의 所有權 또는 所有權외의 權利를 가지고 있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동안 그 土地利用을 公園, 樹林의 植栽, 草地의 造成 및 體育施設의 設置에 限定하도록 그 用途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利用制限으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는 경우에는 基金에서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環境處長官은 損失補償을 받을 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第 51 條(廢棄物處理事業의 調整)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4條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간의 廢棄物處理事業의 調整을 함에 있어서 廢棄物埋立施設등 廢棄物處理施設을 共同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共同으로 사용하게 하고, 당해 施設이 設置된 地域의 生活環境의 보전과 改善을 위하여 필요한 支援對策을 강구하도록 관련地方自治團體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相关地方自治團體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 52 條(國庫補助)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1. 地方自治團體의 경우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費用

2. 公共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費用

第 53 條(廢棄物處理施設設置費用의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廢棄物處理施設 또는 再活用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에 대한 財政的인 지원을 할 수 있다.

第 54 條(廢棄物處理實績의 보고) ① 市·道知事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管轄區域안 的 廢棄物處理實績을 다음해 2月 말까지 環境處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環境處長官은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廢棄物業務에 관련된 指導·團束등의 實績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第 55 條(許可등의 手數料) 第17條第1項·第21條第3項 및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56條(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 總理令으로 定한다.

第57條(聽聞)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9條第1項, 第22條第1項 및 第26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登錄의 取消나 營業의 停지를 命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 기타 利害關係人에게 意見陳述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相對方 또는 代理人 기타 利害關係人이 正當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意見陳述의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8條(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의한 環境處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한 廢棄物處理施設등의 효율적인 管理·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總理令(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管理·운영을 管理·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 6 章 罰 則

第5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元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一般廢棄物處理業을 한 者
2.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業 許可를 받은 者
3. 第20條第6項 또는 第28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閉鎖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4.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計·施工業을 한 者

5.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1條第3項의 규정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施設の 設計·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
6.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特定廢棄物處理業을 한 者
7.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

第6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圓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2.12.8>

1.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一般廢棄物을 처리한 者
2.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一般廢棄物處理業의 許可事項을 변경한 者
3. 第19條第1項 또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期間중에 營業을 한 者
4. 第20條第2項 또는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5. 第20條第5項 또는 第2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 또는 使用停止命令을 위반한 者
6.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施工을 한 者
7.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事項을 변경한 者
8.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定廢棄物을 처리한 者
9.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25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定廢棄物을 처리한 者
10. 第2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11. 第44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12.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13.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14.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利用의 用途制限에 위반하여 土地를

이용한 者

第61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2.12.8>

1.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一般廢棄物을 收集 또는 運搬한 者
2. 第14條第1項 또는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一般廢棄物을 收集·運搬 또는 처리한 者
4.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命令을 위반한 者
5. 第17條第3項 또는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制限 또는 조건을 위반한 者
6. 第20條第2項 또는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變更한 者
- 6의2.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者
7. 第20條第4項 또는 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施設을 유지·管理한 者
8. 第24條第2項·第27條 또는 第4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9.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25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定廢棄物을 收集·보관 또는 運搬한 者
10.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事項을 變更한 者
11. 削除 <92.12.8>
12.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을 두지 아니한 者
13.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14.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15. 第4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廢棄物을 再活用한 者

第62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9條 내지 第6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63條(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버린 者
2. 第15條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3.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4.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處理料金を 받은 者
5. 第20條第3項 또는 第2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6.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記錄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7.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記錄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8.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告知된 날부터 30日 이내에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一般廢棄物處理業 또는 産業廢棄物處理業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處理業 또는 産業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 6月이내에 이 法에 의한 施設·裝備·技術能力등 요건을 갖추어 一般廢棄物處理業 또는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각 해당營業의 許可日 前日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을 계속할 수 있다.

第3條(特定廢棄物排出者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할 特定廢棄物排出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이내에 그 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4條(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産業廢棄物處理施設은 이 法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施設 또는 特定廢棄物處理施設로 본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年이내에 이 法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施設 또는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基準에 적합하도록 당해 施設을 改修하여야 한다.

第5條(産業廢棄物再生利用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廢棄物의 再生利用申告를 한 者는 이 法에 의한 一般廢棄物 또는 特定廢棄物의 再活用申告를 한 者로 본다.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合成樹脂廢棄物處理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5號중 “廢棄物의 처리를”을 “廢棄物의 처리와 再活用을”로 한다.

② 保健環境研究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3號중 “廢棄物管理法에 의한 一般廢棄物·產業廢棄物·汚水淨化施設·畜産廢水淨化施設·糞尿處理施設·쓰레기處理施設등”을 “廢棄物管理法과 汚水·糞尿및畜産廢水の처리에관한法律에 의한 一般廢棄物·特定廢棄物·汚水淨化施設·畜産廢水淨化施設·糞尿處理施設등”으로 한다.

附 則 <92.12.8>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一般廢棄物處理施設の 設置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一般廢棄物處理施設로서 第20條第2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置申告對象이 된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은 이 法에 의하여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③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 (다른 法律의 改正) 環境管理工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2項에 第1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의2. 廢棄物管理法 第48條 및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履行保證金 및 事前積立金

④第2項第1號의2의 규정에 의한 事後管理履行保證金 및 事前積立金은 따로 計定을 設置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附 則 〈93.3.6〉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내지 第5條 省略

油類污染損害賠償保障法

1992. 12. 8 制定

法律 第4532號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的) 이 법은 船舶으로부터 流出 또는 排出된 油類에 의하여 油類汚染損害가 발생한 경우에 船舶所有者의 責任을 명확히 하고 油類汚染損害의 賠償을 보장하는 制度를 확립함으로써 被害者의 보호와 船舶에 의한 油類運送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船舶”이라 함은 散積油類를 貨物로서 運送하기 위하여 建造되거나 改造된 모든 型의 航海船(浮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油類 및 다른 貨物을 運送할 수 있는 船舶은 散積油類를 貨物로서 運送하거나 船舶안에 그 散積油類의 殘留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船舶으로 본다.
2. “船舶所有者”라 함은 船舶法 第8條 第1項의 規定 또는 外國의 法令에 의하여 船舶의 所有者로서 登錄된 者를 말하며, 登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船舶을 所有하는 者를 말한다. 다만, 外國이 所有하는 船舶의 경우에 그 나라에서 그 船舶의 運航者로서 登錄되어 있는 會社 또는 기타의 團體가 있는 때에는 그 會社 또는 기타의 團體를 이 법에 의한 船舶所有者로 보며, 大韓民國 國民이 外國國籍을 가진 船舶을 裸備船한 경우에는 船舶의 所有者로서 登錄된 者와 裸備船者를 모두 이 법에 의한 船舶所有者로 본다.
3. “油類”라 함은 船舶에 貨物로서 運送되거나 船用油로서 사용되는

原油·燃料油·潤滑油등 지속성 炭火水素 鑛物性油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油類汚染損害”라 함은 다음의 損害 또는 費用을 말한다.

가. 流出 또는 排出된 場所에 불구하고 船舶으로부터 油類가 流出 또는 排出되어 초래된 汚染에 의하여 船舶外部에서 발생한 損失 또는 損害

나. 防除措置의 費用 및 防除措置로 인한 추가적 損失 또는 損害

5. “事故”라 함은 油類汚染妨害의 원인이 되는 事件 또는 동일한 원인을 가지는 일련의 事件을 말한다.

6. “防除措置”라 함은 事故가 발생한 후에 油類汚染損害를 방지 또는 輕減하기 위하여 當事者 또는 第3者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합리적 措置를 말한다.

7. “保險者등”이라 함은 이 法에서 정하는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契約에 있어서 船舶所有者의 損害를 填補하거나 賠償義務의 이행을 擔保하는 者를 말한다.

8. “制限債權”이라 함은 船舶所有者 또는 保險者등이 이 法의 規定에 따라 그 責任을 제한할 수 있는 債權을 말한다.

9. “受益債務者”라 함은 해당 責任制限節次에 있어서 制限債權에 대한 債務者로서 責任制限節次 開始의 申請을 한 者외의 者를 말한다.

10. “責任協約”이라 함은 1969年 油類汚染損害에 대한 民事責任에 관한 國際協約(1969年油類汚染損害에 대한 民事責任에 관한 國際協約의 1976年議定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國際基金協約”이라 함은 1971年油類汚染損害補償을 위한 國際基金의 設置에 관한 國際協約을 말한다.

12. “國際基金”이라 함은 國際基金協約 第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油類汚染損害의 補償을 위한 國際基金을 말한다.

第3條 (적용범위) 이 法은 大韓民國의 領域(領海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油類汚染損害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大韓民國의 領域에서의

油類污染妨害를 방지하거나 輕減하기 위한 防除措置에 대하여는 그 場所에 關係없이 이 法을 적용한다.

第 2 章 油類污染損害賠償責任 및 責任制限

第 4 條 (油類污染損害賠償責任) ①油類污染妨害가 발생한 때에는 事故 당시의 船舶所有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다만, 그 油類污染損害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戰爭·內亂·暴動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天災·地變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 船舶所有者 및 그 使用人이 아닌 第3者の 故意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國家 및 公共團體의 航路標識 또는 航行補助施設의 관리의 瑕疵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②事故가 2이상의 船舶이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에 그 油類污染損害가 어느 船舶으로부터 流出 또는 排出된 油類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船舶所有者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다만, 그 油類污染損害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 本文의 事故가 일련의 事件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의 事件 당시의 船舶所有者를 事故 당시의 船舶所有者로 본다.

④大韓民國國民이 裸傭船한 外國國籍船舶으로 인하여 油類污染損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船舶의 所有者와 裸傭船者가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⑤다음 各號의 者에 대하여서는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을 請求하지 못한다.

1. 船舶所有者의 代理人·使用人 또는 船員
2. 船員이 아닌 者로서 導船士등 그 船舶에 役務를 제공하는 者

3. 船舶의 僱船者(第2條 第2號 但書의 規定에 의한 裸僱船者를 제외한다)·管理人 또는 運航者
4. 船舶所有者의 同意를 받거나 管轄官廳의 지시에 의하여 救助作業을 수행한 者
5. 防除措置를 취한 者
6. 第3號 내지 第5號에 規定된 者의 代理人 또는 使用人

⑥油類汚染損害를 賠償한 船舶所有者는 事故와 관련된 第3者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第5項 各號의 者에 대한 求償權의 행사는 그 損害가 이들의 故意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損害發生의 염려가 있음을 認識하면서 無謀하게 한 行爲 또는 不作爲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第5條 (賠償責任의 참작) 油類汚染損害가 被害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責任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第6條 (船舶所有者의 責任制限) ①第4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油類汚染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船舶所有者(法人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油類汚染損害賠償責任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油類汚染損害가 船舶所有者 자신의 故意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損害發生의 염려가 있음을 認識하면서 無謀하게 한 作爲 또는 不作爲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을 제한하고자 하는 船舶所有者는 債權者로 부터 責任限度額을 초과하는 請求金額을 명시한 書面에 의한 請求를 받은 날부터 6月 이내에 法院에 責任制限節次 開始의 申請을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責任協約의 非締約國의 國籍을 가진 船舶의 所有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7條 (責任限度額) ①船舶所有者가 그 責任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그 責任

限度額은 船舶 1톤당 133計算單位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總額은 1千400萬計算單位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第1項에서 “計算單位”라 함은 國際通貨基金의 特別引出權을 말하고 計算單位에 대한 韓貨表示金額의 算定은 船舶所有者등의 責任制限節次에 관한 法律(이하 “責任制限節次法”이라 한다) 第11條 第2項의 規定에 따른다.

第8條 (船舶의 噸數)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 噸數는 國際航海에 종사하는 船舶의 경우에는 船舶法에서 規定하는 國際總噸數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同法에서 規定하는 總噸數로 한다.

第9條 (責任制限의 범위) 船舶所有者의 責任의 제한은 船舶마다 同一事故로부터 생긴 그 船舶에 관계되는 船舶所有者 및 保險者등에 대한 모든 制限債權에 미친다.

第10條 (制限債權者가 받는 辨濟의 比率) 船舶所有者가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을 제한한 경우에는 制限債權者는 그 制限債權額의 比率에 따라 辨濟를 받는다.

第11條 (權利의 消滅) 第4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所有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은 油類汚染損害가 발생한 날부터 3年이내에 裁判上 請求가 없는 경우에는 消滅한다. 그 油類汚染損害의 原因이 되었던 최초의 事故가 발생한 날부터 6年이내에 裁判上 請求가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12條 (船舶所有者에 대한 油類汚染損害賠償請求事件의 管轄) 第4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所有者에 대한 訴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管轄法院이 정하여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法院의 管轄에 속한다.

第13條 (外國判決의 효력) ①責任協約 第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權이 있는 外國法院이 油類汚染損害賠償請求의 訴에 관하여 한 確定判定은 다음 各號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있다.

1. 그 判決을 詐欺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被告가 訴訟의 開始에 필요한 召喚 또는 命令의 송달을 받지 못하

였거나 자기의 主張을 陳述할 公平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定判決에 대한 執行判決에 관하여 民事訴訟法
第477條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同項중 “外國判決이 第203條의
條件을 具備하지 아니한 때”를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 第13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로 본다.

第3章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契約

第14條 (保障契約의 締結強制) ①大韓民國 國籍을 가진 船舶으로 200톤이상의
散積油類를 貨物로서 運送하는 船舶所有者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油
類汚染損害賠償保障契約(이하 “保障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
다.

②大韓民國 國籍을 가진 船舶외의 船舶으로 2千톤이상의 散積油類를
貨物로서 積載하고 國內港에 入·出港하거나 國內의 繫留施設을 사용
하고자 하는 船舶所有者는 保障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大韓民國 國籍을 가진 船舶외의 船舶으로 200톤이상 2千톤미만의
散積油類를 貨物로서 積載하고 國內港에 入·出港하거나 國內의 繫留
施設을 사용하고자 하는 船舶은 交通部令이 정하는 油類汚染防止設備와
船舶安全設備를 갖추어야 한다.

④海運港灣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船舶에 대하여는 그 船舶의
航行停止를 명할 수 있다.

⑤海運港灣廳長은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船舶에 대하여는
國內港의 入·出港을 거부하거나 國內 繫留施設의 사용을 許可하지 아
니할 수 있다.

第15條 (保障契約) ①保障契約은 船舶所有者가 그 船舶이 積載한 油類에 의한
汚染損害에 대하여 責任을 지는 경우에 그 賠償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그 船舶所有者가 입은 損害를 填補하는 保險契約 또는 그 賠償義務의

이행을 擔保하는 契約이어야 한다.

② 船舶所有者와 保障契約을 체결하는 者は 船舶所有者의 損害를 填補하거나 賠償義務의 이행을 擔保할 財政能力이 있는 交通部속이 정하는 船主相互保險組合·保險會社·金融機關 기타 이와 유사한 法人이어야 한다.

③ 保障契約을 체결하는 경우에 船舶所有者의 損害를 填補하기 위한 保險金額 또는 賠償義務 履行擔保金額은 각 船舶마다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限度額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④ 保障契約은 責任協約 第7條 第5項의 規定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第16條 (保險者등에 대한 損害賠償의 請求) ① 第4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所有者의 損害賠償責任이 발생한 때에는 被害者는 保險者등에 대하여도 직접 損害賠償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船舶所有者의 故意에 의하여 損害가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 本文의 경우에 保險者등은 船舶所有者가 被害者에 대하여 主張할 수 있는 抗辯만으로 被害者에 對抗할 수 있다.

③ 第4條 第6項, 第6條 第1項·第2項 및 第7條 내지 第11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을 하는 保險者등에게 이를 準用한다.

第17條 (保險者등에 대한 油類汚染損害賠償請求事件의 管轄) 第1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者등에 대한 訴는 第4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所有者에 대한 訴에 관하여 管轄權을 가지는 法院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第18條 (保障契約證明書) ① 海運港灣廳長은 船舶(責任協約締約國인 外國의 國籍을 가진 船舶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保險者등과 保障契約을 체결한 船舶所有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그 船舶에 대하여 保障契約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書面(이하 “保障契約證明書”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하고자 하는 者は 船舶의 명칭, 保障契約의

종류 기타 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申請書를 海運港灣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保障契約證明書의 申請·교부·재교부·有效期間·手數料納付 기타 필요한 사항은 交通部令으로 정한다.

第19條 (保障契約證明書 기재사항의 변경) ① 保障契約證明書를 교부받은 者는 그 保障契約證明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5日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海運港灣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海運港灣廳長은 申告人에 대하여 새로운 保障契約證明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경우에 그 申告人은 지체없이 第1項의 保障契約證明書를 海運港灣廳長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第20條 (保障契約證明書의 반납) 保障契約證明書를 교부받은 者는 그 有效期間이 만료되거나 保障契約이 失效된 경우 또는 保障契約이 第15條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保障契約證明書를 海運港灣廳長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第21條 (保障契約證明書의 비치) ① 200톤이상의 散積油類를 貨物로서 運送하는 大韓民國 船舶은 保障契約證明書를 船舶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大韓民國 國籍을 가진 船舶의 船舶중 2千톤이상의 散積油類를 貨物로서 積載하고 國內港에 入·出港하거나 國內의 繫留施設을 사용하는 船舶에는 責任協約締約國인 外國이 그 船舶에 대하여 保障契約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責任協約附屬書의 양식에 의한 書面 또는 外國이 責任協約 第7條 第12項의 規定에 의한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한 書面을 비치하여야 한다.

第22條 (적용제외) 이 章의 規定(第21條 第2項의 規定을 제외한다)은 外國이 所有하는 船舶으로서 保障契約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船舶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章 國際基金

第1節 國際基金에 대한 請求

第23條 (國際基金에 대한 被害者의 補償請求) 被害者는 船舶所有者 또는 保險者 등으로부터 賠償을 받지 못한 油類汚染損害金額에 관하여 國際基金協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際基金에 대하여 國際基金協約 第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4條 (國際基金에 대한 船舶所有者등의 填補請求) 船舶所有者 또는 保險者 등은 損害賠償額의 支給責任이 있는 금액에 관하여 國際基金協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際基金에 대하여 國際基金協約 第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填補를 請求할 수 있다.

第25條 (國際基金의 訴訟參加) ①第4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所有者에 대한 訴訟이나 第1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者등에 대한 訴訟이 係屬되어 있는 경우에는 國際基金은 當事者로서 그 訴訟에 참가할 수 있다.

②民事訴訟法 第72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6條 (國際基金에 대한 訴訟의 告知) ①第25條 第1項의 경우 當事者는 國際基金에 訴訟의 係屬을 告知할 수 있다.

②民事訴訟法 第78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7條 (國際基金에 대한 請求訴訟의 管轄) ①國際基金協約 第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 또는 同 協約 第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填補를 請求하기 위한 國際基金에 대한 訴의 管轄에 관하여는 第1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第1項의 訴는 동일한 油類汚染損害에 관하여 第4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所有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의 訴 또는 第1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者등에 대한 損害賠償請求의 訴가 第1審 法院에 係屬되어 있거나 責任制限事件이 係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法院의 管轄에

專屬한다.

第28條(外國判例의 효력) 第13條의 規定은 國際基金協約 第7條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權이 있는 外國法院이 한 確定判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 2 節 國際基金 分擔金등

第29條(分擔油量의 보고) ①海上運送되어 國內에 揚荷되는 原油 및 燃料油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油類(이하 “分擔油”라 한다)를 船舶으로부터 受領한 者(이하 “油類受領人”이라 한다)는 年間 受領한 分擔油의 合計量이 15 萬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年度에 그 受領量을 海運港灣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貸與탱크 所有者 등 他人을 위하여 分擔油를 受領한 者는 油類受領人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分擔油를 受領하게 한 者를 油類受領人으로 본다.

②油類受領人의 事業活動을 支配하는 者가 있는 경우에 그 油類受領人이 船舶으로부터 年間 受領한 分擔油의 合計量(油類受領人의 事業活動을 支配하는 者도 分擔油를 受領한 경우에는 그 양을 加算한 合計量)이 15 萬톤을 초과하는 때에는 油類 受領人의 事業活動을 支配하는 者는 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年度에 각 油類受領人이 받은 油量을 海運港灣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油類受領人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油類受領人의 事業活動을 支配하는 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0條(國際基金에 대한 資料의 송부) ①海運港灣廳長은 第29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動力資源部長官에게 통보하고 國際基金協約 第1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書面을 國際基金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海運港灣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書面을 國際基金에 송부한 때

에는 그 書面에 기재된 油類受領人에게 그와 관련된 分擔油量을 통지하여야 한다.

第31條 (國際基金分擔金の 납부) ①第29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分擔油의 量을 보고하여야 할 油類受領人은 國際基金協約 第11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에 따라 國際基金協約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を 國際基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擔金を 납부한 油類受領人은 그 납부사실을 海運港灣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 納付義務者가 分擔金を 滯納하는 경우에는 당해 分擔金과 國際基金의 總會에서 정하는 利率에 의한 利子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32條 (國際基金 滯納者에 대한 催告)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 納付義務者가 分擔金を 滯納하는 경우에 海運港灣廳長은 당해 納付義務者에게 分擔金 납부의 이행을 催告하여야 한다.

第 5 章 責任制限의 節次

第33條 (責任制限事件의 관할) ①이 法에 따른 責任制限事件은 그 油類汚染損害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地方法院의 관할에 專屬한다.

②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 損害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領域밖에서 취한 防除措置에 관한 責任制限事件으로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法院이 정하여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法院의 관할에 專屬한다.

第34條 (責任制限事件의 移送) 法院은 현저한 損害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責任制限事件을 다른 管轄法院이나 制限債權者의 普通裁判籍 所在地 管轄法院 또는 동일한 事故로 인하여 생긴 油類汚染損害에 관한 責任制限事件이 係屬하는 法院에 移送할 수 있다.

第35條 (供託命令) ①法院은 責任制限節次開始의 申請이 相當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申請人에 대하여 14日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내에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限度額에 相當하는 金額 및 이에 대한 事故發生日 기타 法院이 정하는 起算日부터 供託指定日까지 年 6分の 比率에 의한 利子를 加算한 金額을 供託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責任限度額에 相當하는 金額의 算定과 供託命令의 송달에 관하여는 責任制限節次法 第11條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責任制限節次開始 申請人은 法院의 許可를 받아 第1項의 現金供託에 갈음하여 供託保證書를 제출할 수 있다.

④第3項의 경우에는 責任制限節次法 第13條 내지 第1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第1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第36條 (國際基金의 참가) 國際基金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責任制限節次에 참가할 수 있다.

第37條 (國際基金에 대한 責任制限節次 係屬의 통지등) ①責任制限節次가 係屬중인 때에는 責任制限節次의 申請을 한 者, 受益債務者 또는 責任制限節次에 참가한 者는 國際基金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하고자 하는 者는 第41條에서 準用하는 責任制限節次法 第21條 第1項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面을 法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法院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書面을 國際基金에 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第38條 (國際基金에 대한 責任制限節次 開始決定 取消公告등의 송달) ①法院은 國際基金이 責任制限節次에 참가하거나 國際基金에 대하여 第37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송달이 된 경우에 第41條에서 準用하는 責任制限節次法 第21條 第1項 各號의 사항에 變경이 생긴 때에는 그 變경사항을 기재한 書面을, 第41條에서 準用하는 責任制限節次法 第25條 第1項 · 第83條 第1項 또는 第8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가 있는 때에는 그 公告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書面을 國際基金에 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 責任制限節次法 第8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39條 (防除措置를 취한 船舶所有者의 責任制限節次에의 참가) ① 防除措置를 취한 船舶所有者는 그 防除措置의 費用등에 관하여 制限債權을 가지는 者로서 責任制限節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責任制限節次法 第43條·第45條(責任制限節次法 第46條 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第48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40條 (訴訟節次の 중지) ① 第41條에서 準用하는 責任制限節次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制限債權에 관하여 그 債權의 債權者와 申請人 또는 受益債務者간에 訴訟이 係屬중인 때에는 法院은 國際基金이 그 訴訟에 참가하고 있거나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告知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原告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외의 경우에는 原告의 申請에 의하여 그 訴訟節次の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第39條 第2項에서 準用하는 責任制限節次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경우에 그 債權에 관하여 國際基金協約 第4條 第1項에 規定하는 補償을 請求하기 위한 國際基金에 대한 訴訟이 係屬중인 때에는 法院은 職權으로 그 訴訟節次の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경우에 原告의 申請에 의하여 訴訟節次の 중지를 명한 때에는 法院은 原告의 申請에 의하여 그 訴訟節次の 中止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第41條 (責任制限節次法の 準用)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責任制限節次에 관하여는 이 法의 規定외에 責任制限節次法을 準用한다. 이 경우 責任制限節次法 第4條, 第6條 내지 第8條, 第27條, 第34條 및 第88條중 “이 法”은 각각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 第41條에서 準用하는 이 法”으로, 同法 第10條중 “商法 第747條 第1項 各號의 區別에 의한 制限債權의 各 總額이 이에 대응하는 各 責任限度額을 초과”는 “制限債權의 額이 이 法 第7條의 責任限度額을 초과”로, 同法 第11條 第1項중 “商法 第747條 第1項 各號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責任限度額”은 “責任限度額”으로, 同法 第17條 第1號 中 “商法 第752條 第1項”은 “이 法 第6條 第2項”으로, 同法 第18條 第1號 中 “商法 第747條 第1項 各號의 區別에 의한 制限債權의 各 總額이 이에 대응하는 各”은 “制限債權의 總額이”로, 同條 第2號는 “第6條 第1項 但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로, 同法 第53條 中 “商法 第747條 第1項 各號의 區別에 의한 制限債權의 分類”는 “分類”로, 同法 第56條 中 “그 내용과 商法 第747條 第1項 各號의 區別에 의한 制限債權의 分類가”는 “그 內容이”로, 同法 第57條 第2項 中 “및 商法 第747條 第1項 各號의 區別에 의한 制限債權의 分類를 定한다”는 “을 定한다”로, 同法 第66條 第2項 中 “商法 第747條 第1項 各號에 의한 制限債權의 分類에 따라 다음”은 “다음”으로 본다.

第42條 (大法院規則) 이 法에서 定하는 것외에 이 法에 다른 責任制限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定한다.

第6章 補 則

第43條 (船舶優先特權) ① 制限債權者는 그 制限債權에 관하여 事故船舶, 그 屬具 및 受領하지 아니한 運賃에 대하여 優先特權이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特權은 商法 第861條 第1項 第4號의 다음 順位로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特權에 관하여는 商法 第861條 내지 第87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4條 (締約國인 外國에서의 基金形成의 效果) ① 責任協約의 締約國인 外國에서 責任協約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이 形成된 경우에 그 基金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制限債權을 가진 債權者는 그 基金외에 船舶所有者 또는 保險者등의 財産에 대하여 權利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責任制限節次法 第28條 내지 第30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45條 (出入檢査·보고등) ①海運港灣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21條 및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關係書類의 제출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船舶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關係書類를 檢査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 또는 확인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船舶所有者 또는 分擔金 納付義務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확인을 正當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6條 (公用船舶) 이 法의 規定은 大韓民國이 所有하는 船舶으로서 公用에 제공하는 船舶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7條 (權限의 위임·委託) ①海運港灣廳長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海運港灣廳長은 다음 各號의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運港灣廳長이 지정하는 海上災害防止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1.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分擔油 受領量의 報告의 受理
2.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通報, 書面의 송부 및 分擔油量의 통지
3. 第31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의 受理
4.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 납부의 이행 催告

第7章 罰 則

第48條 (管理人的 收賂罪) ①第41條에서 準用하는 責任制限節次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管理人 또는 第41條에서 準用하는 責任制限節次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管理人代理가 그 職務에 관하여 賂物을 收受, 요구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圓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收受된 賂物은 이를 沒收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第49條 (賂物の 供與 등) 第4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賂物을 約束·供與 또는 供與의 의사를 표시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5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保障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者
2. 第14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保障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國內港에 入·出港등을 한 者
3.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障契約證明書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은 者.

第51條 (罰則) 第41條에서 準用하는 責任制限節次法 第3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書類提出을 요구받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또는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書類를 제출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5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保障契約證明書を 지체없이 반납하지 아니한 者
2. 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舶안에 保障契約證明書を 비치하지 아니한 者
3. 第21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舶안에 證明書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國內港에 入·出港등을 한 者
4. 第29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5. 第45條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所屬公務員의 檢査 또는 확인을 正當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第53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0條 내지 第5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

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科한다.

第54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海運港灣廳長이 第4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 종사하는 海上災害防止專門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55條 (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2. 第19條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保障契約證明書를 지체없이 반납하지 아니한 者
3. 第31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分擔金 납부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運港灣廳長(第4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이 地方海運港灣廳長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地方海運港灣廳長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海運港灣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海運港灣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법은 1993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 第11號·第12號, 第23條 내지 第32條, 第36條 내지 第38條, 第40條(國際基金이 制限債權에 관한 訴訟에 참가하거나 國際基金이 船舶所有者·保險者등에 대한 訴訟의 告知를 받은 경우 및 國際基金에 대한 訴訟이 係屬중인 경우에 한한다), 第45條(分擔油受領에 관한 關係書類의 제출·檢査·확인에 한한다), 第47條 第2項, 第52條 第4號·第5號(分擔金 納付義務者의 檢査·확인 거부등에 한한다), 第53條(第52條 第4號의 위반행위 및 同條 第5號의 위반행위중 分擔金 納付義務者의 檢査·확인 거부등에 한한다), 第54條 및 第55條 第1項 第3號의 規定은 國際基金協約이 大韓民國에 대하여 效力을 발생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법은 이 법 施行日 이후에 최초로 油類汚染損害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事件부터 적용한다.

③(責任限度額에 관한 經過措置)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所有者의 責任限度額은 國際基金協約이 大韓民國에 대하여 效力을 발생하기 전까지는 1969年 油類汚染損害에 대한 民事責任에 관한 國際協約 第5條 第1項 및 第9項의 規定에 의한 金額을 그 責任限度額으로 한다.

④(責任協約에 의하여 교부한 證明書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責任協約에 의하여 海運港灣廳長이 교부한 財政保證證明書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된 保障契約證明書로 본다.

環境影響評價法

1993. 6. 11. 制定

法律 第4567號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的) 이 법은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의 事業計劃을 수립·施行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環境에 미칠 영향을 評價·검토하여 環境의으로 건진하고 지속가능한 開發이 되도록 함으로써 快適한 環境을 유지·造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環境影響評價”라 함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의 事業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施行으로 인하여 環境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하 “環境影響”이라 한다)을 미리 豫測·分析하여 環境影響을 줄일 수 있는 方案(이하 “環境影響低減方案”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2. “事業者”라 함은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의 事業計劃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施行하는 者를 말한다.

第 3 條 (國家등의 責務)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각종 정책 또는 計劃을 수립·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影響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保全의 중요성을 깊이 認識하여 당해 사업의 施行으로 인한 環境影響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2章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等

第4條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 ①環境影響評價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各號와 같다.

1. 都市의 開發
2. 産業立地 및 工業團地의 造成
3. 에너지開發
4. 港灣建設
5. 道路建設
6. 水資源開發
7. 鐵道(都市鐵道を 포함한다)의 建設
8. 空港의 建設
9. 河川의 이용 및 開發
10. 埋立 및 開墾事業
11. 觀光團地의 開發
12. 體育施設의 設置
13. 山地의 開發
14. 特定地域의 開發
15. 廢棄物處理施設 및 糞尿處理施設의 設置
16. 기타 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影響評價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環境影響評價分野 및 項目) ①環境影響評價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이하 “對象事業”이라 한다)의 施行으로 영향을 받게 될 自然環境, 生活環境 및 社會·經濟環境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環境影響評價의 內容項目(이하 “評價項目”이라 한다)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②環境處長官은 對象事業의 特性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對象事業에 따라 중점적으로 環境影響評價를 실시하여야 할 評價項目을 지정·告示할 수 있다.

第 6 條 (環境影響評價基準)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評價項目의 評價基準은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으로 한다.

第 7 條 (環境影響評價對象地域) 環境影響評價는 對象事業의 施行으로 環境影響을 받게 되는 地域으로서 環境影響을 科學的으로 豫測·分析한 資料에 의하여 범위가 設定된 地域(이하 “環境影響評價對象地域”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第3章 環境影響評價書의 작성등

第 8 條 (環境影響評價書의 작성) 事業者는 對象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影響評價에 관한 書類(이하 “評價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第 9 條 (住民의 意見收斂) ①事業者가 評價書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說明會 또는 公聽會등을 개최하여 環境影響評價對象地域안의 住民(이하 “住民”이라 한다)의 의견을 收斂하고 이를 評價書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의 住民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公聽會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의 의견을 收斂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評價書草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意見收斂의 방법·節次 및 評價書草案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 (環境影響評價의 代行) 事業者는 第8條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評價書 또는 評價書草案을 작성함에 있어서 環境影響評價의 실시를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評價對行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第11條 (環境影響評價代行者의 지정) 環境影響評價의 실시를 代行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 環

環境處長官으로부터 環境影響評價代行者(이하 “評價代行者”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總理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12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評價代行者의 指定을 받을 수 없다.

1. 禁治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2. 破產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이 取消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大氣環境保全法, 騒音·振動規制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13條 (評價代行者의 指定取消등) ①環境處長官은 評價代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事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12條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12條 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指定을 받은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指定書를 貸與하거나 都給받은 環境影響評價代行業務를 一括하여 下都給한 경우
4.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1년에 2회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6.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環境影響評價代行業務를 不實하게 한 경우
7. 지정받은 후 1年이내에 環境影響評價代行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年이상 環境影響評價代行實績이 없는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の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③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取消 또는 業務停止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條 (指定取消 또는 業務停止된 評價代行者의 業務繼續) ①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取消 또는 業務停止의 처분을 받은 者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環境影響評價代行契約에 한하여 그 環境影響評價代行業務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影響評價代行業務를 계속하는 者는 당해 業務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評價代行者로 본다.

第15條 (評價書作成費用의 算定基準) 環境處長官은 評價書의 작성에 소요되는 費用을 算定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第4章 環境影響評價書의 協議등

第16條 (評價書의 協議등) ①事業者중 對象事業 또는 對象事業計劃(이하 “事業計劃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認可·許可·免許 또는 決定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評價書를 작성하여 승인등을 행하는 機關(이하 “承認機關”이라 한다)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承認機關의 長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事業者(이하 “承認機關의 長등”이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評價書 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作成된 評價書에 대하여 環境處長官과 協議하

여야 한다. 이 경우 承認機關의 長은 評價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協議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書의 提出時期 및 協議要請時期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 (評價書의 검토) ①環境處長官은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시에 제출된 評價書를 검토함에 있어서 事業計劃등이 環境影響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事業計劃등의 調整 또는 補完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事業者 및 承認機關의 長에게 事業計劃의 調整 또는 補完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環境處長官은 評價書를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事業者 또는 承認機關의 長에게 관련 資料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의 住民이 추천하는 專門家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處長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事業者 또는 承認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8條 (協議內容의 통보) ①環境處長官은 評價書의 검토·補完등의 措置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協議內容”이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承認機關의 長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內容을 통보받은 承認機關의 長등은 이를 지체없이 事業者에게 통보하여 協議內容에 따른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하거나 協議內容에 따른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19條 (協議內容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①承認機關의 長은 事業計劃등에 대한 승인등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協議內容이 事業計劃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協議內容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事業計劃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야 한다.

②承認機關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事業者가 協議內容을 반영하여 事業計劃등을 확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環境處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20條 (異議申請) ①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 또는 承認機關의 長등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받은 協議內容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는 承認機關의 長을 거쳐 環境處長官에게, 承認機關의 長등은 環境處長官에게 각각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異議申請은 事業者가 評價書에서 제시한 내용외의 사항에 한한다.

② 承認機關의 長등은 事業計劃등의 變경을 隨伴하는 協議內容에 대한 異議申請이 있을 때에는 異議申請事項에 관한 처리가 완료된 후 당해 事業計劃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事業計劃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第21條 (評價書의 再協議등) ① 事業者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內容을 통보받은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이상으로 事業計劃등을 變경하고자 할 때에는 評價書를 再作成하여야 하며, 事業者중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는 再作成된 評價書를 承認機關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承認機關의 長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 또는 再作成된 評價書에 대하여 環境處長官과 再協議하여야 한다.

③ 第5條 내지 第10條, 第16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書의 再作成 및 再協議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2條 (再協議對象이 아닌 事業計劃등의 變경) ① 事業者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再協議對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事業計劃등의 變경의 경우로서 事業計劃등의 變경에 따른 協議內容의 變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事業計劃등의 變경에 따른 環境影響低減方案을 강구하여 이를 變경되는 事業計劃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는 環境影響低減方案에 대하여 미리 承認機關의 長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承認機關의 長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影響低減方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環境處長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低減方案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第1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章 協議內容의 관리등

第23條(協議內容의 履行義務) ①事業者는 對象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事業計劃등에 반영된 協議內容(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再協議된 內容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低減方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事業者는 協議內容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工事現場에 總理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議內容등을 기재한 管理臺帳을 비치하고, 協議內容의 履行狀況을 點檢·보고하게 하기위하여 協議內容管理責任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協議內容을 이행하여야 할 事業者가 변경된 때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의 義務는 변경된 事業者에게 承繼된 것으로 본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內容管理責任者의 資格基準·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승으로 정한다.

第24條(協議內容의 관리·監督) ①承認機關의 長은 協議內容이 이행되도록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를 監督하여야 한다.

②環境處長官 및 承認機關의 長은 事業者에게 協議內容의 이행에 관련된 資料를 제출하게 하거나 事業場에 대한 現地調査·확인을 할 수 있다.

③承認機關의 長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가 協議內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④承認機關의 長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內容의 이행을 위한 措置에도 불구하고 協議內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周邊環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工事中止를 명하여야 한다.

⑤環境處長官은 協議內容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事業者 또는 承認機關의 長에게 協議內容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 또는 工事中止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者 또는 承認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事業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거나 承認機關의 長이 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環境處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第25條 (事業着工등의 通報) 事業者는 對象事業을 着工 또는 竣工하거나 3月 이상 工事を 中止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處長官 및 承認機關의 長(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環境處長官)에게 그 내용을 通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通報는 다른 法令에 의한 通報등과 함께 할 수 있다.

第26條 (事後環境影響調査) ①事業者는 對象事業의 着工후에 발생될 수 있는 環境影響으로 인한 周邊環境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評價項目別로 環境影響을 調査하고, 그 결과를 環境處長官 및 承認機關의 長(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環境處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影響을 調査하여야 할 對象事業·評價項目 및 調査期間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27條 (事前工事施行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①事業者는 第16條 내지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再協議 또는 再協議對象이 아닌 事業計劃등의 變更節次등이 완료되기 전에 對象事業에 관련되는 工事を 施行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第21條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再協議 또는 再協議對象이 아닌 事業計劃등의 변경의 경우 協議內容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工事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承認機關의 長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事を 施行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工事中止를 명하여야 한다.

③環境處長官은 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事を 施行하는 때에는 承認機關의 長등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工事中止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承認機關의 長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6長 補 則

第28條 (評價代行者의 技術人力에 대한 教育) 評價代行者는 소속 技術人力에 대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이 실시하는 教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第29條 (情報의 蒐集·普及 및 專門人力의 育成) 環境處長官은 環境影響評價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環境影響評價에 관련된 情報을 蒐集·普及하여야 하며, 專門人力의 育成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30條 (環境影響評價協會) ① 評價代行者 및 環境影響評價關聯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環境影響評價에 관한 調査·研究·教育·弘報 기타 環境影響評價關聯業務의 健全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環境影響評價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는 定款을 작성하여 環境處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環境處長官은 協會의 운영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기타 定款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定款 또는 事業計劃의 변경이나 任員의 改任을 명할 수 있다.

⑤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31條 (費用負擔) 事業者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住民의 意見收斂에 소요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32條 (手數料)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評價代行者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33條 (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 이 法에 의한 環境處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나 地方環境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環境處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第7章 罰 則

第34條 (罰則) 第24條第4項 또는 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中止命令에 위반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5條 (罰則)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評價代行者의 指定을 받지 아니하고 環境影響評價代行業務를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6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4條 또는 第3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7條 (過怠料) ① 第2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소속 技術人力의 教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評價代行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處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環境處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處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이 법은 公布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評價書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 및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 또는 協議要請되거나 再作成 또는 再協議節次가 진행중인 評價書는 第5條 내지 第10條, 第16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 또는 協議要請되거나 再作成 또는 再協議節次가 진행중인 評價書로 본다.

第 3 條 (協議內容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 및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된 協議內容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된 協議內容으로 본다.

第 4 條 (評價代行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받은 評價代行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받은 評價代行者로 본다. 다만, 이 법 施行일부터 3월 이내에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第 5 條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한 告示·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 전에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 내지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告示·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 6 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環境政策基本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節(第26條 내지 第28條)을 削除한다.

② 濟州道開發特別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 第1項 중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를 “環境影響評價法에 불구하고”로 한다.

第 7 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